



주식회사 플러스리더

수신자 수신처 참조

참 조 업무담당자

제 목 동탄2신도시 A47블록 한신휴플러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탄2신도시 A47블록 한신휴플러스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업무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1) '16.05.26(목)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인 동탄2신도시 A47블록 한신휴플러스의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불임과 같이 배정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참고하여 각 기관에서는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16.05.3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가격·평면 등 자세한 주택분양 자료는 '15.05.26(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홈페이지 (<http://www.dt-hyuplus.com>)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기한까지 대상자 명단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급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끝

주식회사 플러스리더



문서번호 : PL-2016-0501

시행일자 : 2016.05.17

담당부서 : 기획팀 팀장 이규돈

우 18487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

TEL 1522-1225 / FAX 031)374-1263 / 홈페이지 <http://www.dt-hyuplus.com>

수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서울시 사회복지과,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경기도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국방부

동탄2신도시 A-47블록 (한신휴플러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동탄2신도시 A-47 블록
- 공급규모 : 지하1층, 지상10~25층 11개동, 총930세대
- 배정내역

타입	주택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m ²)			배정호수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76	76.4713	326	76.4713	26.3269	102.7982	32	
83A	83.7489	372	83.7489	26.4694	110.2183	36	
83B	83.4162	232	83.4162	26.6842	110.1004	22	
소계		930				90	

※ 상기 타입은 표기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청약시 주택형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m²)×0.3025 또는 형별면적(m²)÷3.3058]

■ 특별공급 일정계획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6. 05. 26(목)	일간신문 및 동탄2신도시 A47블록 한신휴플러스 홈페이지(http://www.dt-hyuplus.com)
• 건본주택 개관	2016. 05. 27(금)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번지 한신휴플러스
• 특별공급 접수일자	2016. 06. 01(화)	건본주택 방문접수(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2016. 06. 01(화)	당사 건본주택에 게재
• 동호수발표	2016. 06. 08(수)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당사 건본주택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6.05.26.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거주지역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건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번(무주택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III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05. 26 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건본주택)에 비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인감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건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6.06.01(화)예정]에 분양사무실(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번지, 한신휴플러스 건본주택)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 미계약동 .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6. 05. 26(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
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사이버 건본주택
(<http://www.dt-hyuplus.com>)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 05. 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